
IV. 주요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현황

1. 미국

가. 도입배경

미국 민법(civil law)상의 손해배상은 일시금 형태로 인정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정기금 형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시금배상은 불확실한 많은 요소에 기초하여 과소 또는 과대 배상의 위험이 있고, 과소배상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다시 사회 전체에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¹²⁾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후 정기금지급 등의 구조화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 도입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다.

미국 최초의 구조화지급방식은 1968년 미국 Thalidomide 수면제 제조업자인 Richardson-Merrill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루어졌다.¹³⁾ 원고는 임신 중 여성이 당사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자녀에게 영구적인 심각한 신체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정기금형태로 지불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후 구조화지급방식은 중증 인적상해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비과세혜택의 조세조치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1982년 의회는 피해자가 일시금을 조기에 탕진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익을 증진

12) 외국사법제도연구반(2007),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상액 산정』, 법원행정처, p. 69.

13) Jeremy Babener(2010), "Structured Settlements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s: Regulat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ed Settlement History",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Vol.13(1), p. 18.

시키기 위해 정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세금보조를 받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1982년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에 따라 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구조화지급방식에 관련한 비과세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구조화지급방식이 성장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정기금지급은 높은 신용등급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또는 정부채권을 구입하여 이루어지므로 지급불능리스크가 낮다. 둘째, 지급흐름을 총 지급규모 내에서 개인의 목적에 따라 기간과 규모를 설계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인플레이션 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셋째, 급여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일정기간 동안 보증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다. 넷째, 손해배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일관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의 약 90% 가량이 5년 이내에 탕진하는 것으로 밝혀졌고,¹⁴⁾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첫해에 약 70%를 탕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구조화지급방식은 연금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으로부터 격리(bankruptcy proof)” 될 수 있다.

나. 운영방법

정기금 운영방법으로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정기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양수인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정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정기금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

14) Jeremy Babener(2009),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6, p.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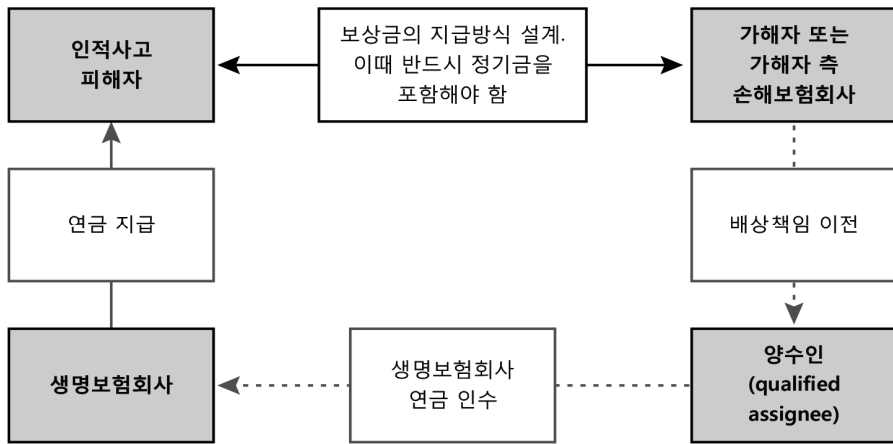
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신용도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정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모든 다른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state)별로 보험보증기금이 있어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보증 한도가 있으며 주외거주자의 보험금은 보호하지 않아 보험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회계적인 이유나 위험관리 측면에서 정기금지급으로 인한 배상책임의 장기화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우 현재 구조화지급방식에서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가 정기금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미국의 경우 1983년 이전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정기금지급을 위한 기금(funding asset)을 직접 소유하였으나, 1983년부터는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1982)과 세법 Sec.130에 의해 연금지급을 제3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가해자의 배상책임은 사라지고, 가해자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8년 Tax Code는 구조화지급방식의 수취인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권을 갖도록 변경되었다.

물론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수탁사에게 배상책임을 이전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수인의 신용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대개 신용도가 높은 생명보험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hell company)이며, 추가로 피해자에게 연금에 대한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주거나 양수인의 모회사인 생명보험회사가 보증(secondary guarantee)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낮추고 있다. 이때 생명보험회사의 특수목적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은 양수인이 자사의 연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IV-1〉 미국의 배상책임 이전을 통한 구조화지급방식 운영체계



다. 관련법규

미국에서 정기금제도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그 권리의 인수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기금지급과 관련된 상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다.

1) 정기금지급대상

미국에서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기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기금제도는 1967년 메인 주에서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70년대에 뉴햄프셔,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소수의 주가 정기금제도를 채택했고, 대부분의 주가 80년 이후에 채택했다. 2003년 현재 정기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주는 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16개 주이고, 나머지 주는 정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표 IV-1〉 미국의 정기금지급 채택 현황

(단위: 달러)

	정기금의 의무규정	정기금의 임의규정	정기금 규정 없음
치료비	루이지애나(50만), 미시간, 뉴욕(25만), 위스콘신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손해배상금	앨라배마(15만),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5만), 콜로라도(15만), 플로리다(20만), 일리노이(25만), 캔자스(50만), 메인(25만), 미주리(10만), 오키오(20만), 노드아일랜드(15만), 사우스다코타(20만), 유타(10만), 워싱턴(10만), 위스콘신	아칸소(10만), 코네티컷,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네소타(10만), 몬테나(10만), 뉴햄프셔(5만),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의료과실), 사우스캐롤라이나(1만)	

주: ()의 숫자는 초과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Anthony H. Riccardi and Thomas R. Ireland(2003), "A Primer on Annuity Contracts, Structured Settlements: Periodic Payment Judgement", *Journal of Legal Economics*, Winter 2002-2003, pp. 42~46에서 정리함.

정기금지급을 규정하는 방식은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강제화(mandatory)하거나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기금지급 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주는 뉴욕 주를 비롯한 20개 주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는 델라웨어 주 등 12개 주이다. 강제화하고 있는 주의 내용을 보면 뉴욕 주의 경우 1985년에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 정기금지급을 의무화했으며, 워싱턴 주는 1985년에 인적사고의 손해배상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정기금지급을 의무화했다.

2) 세법(Internal Revenue Code)

(1) 정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인적사고에 대한 정기금지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은 1982년도에 정기금지급법(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정기금지급의 소득세제 적용과 관련한 Sec.104 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Sec.104(a)(2)는 신체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징벌적보상 제외)을 소송(suit) 또는 합의(agreement)에 의해서 일시금 또는 정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다.

미국국세청(IRS)은 구조화지급방식과 관련된 Sec.104(a)(2)를 해석하기 위한 두 가지 관련 통칙(Revenue Ruling 79-220, 79-313)을 제정했다. 이들 통칙은 인적상해에 대한 정기금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통칙 79-220은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가치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정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의 명목가치 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해 구입한 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정기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된 일시금의 실질 혹은 미경과 수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 통칙 79-313은 매년 설정한 비율에 의해 상승하는 지급액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연간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이들 통칙의 핵심은 피해자(즉, 납세자)는 배상금의 현재가치의 실질 혹은 미경과 수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래지급에 대한 통제권 또는 보증된 수익을 갖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는 과세기준소득에 그러한 금액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수탁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Sec.104(a)(2)가 피해자보상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면 Sec.130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수탁받은 기관을 고려하여 제정된 조항이다. Sec.130에 따르면 “조건부양도계약(qualified assignment)”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수탁자가 “조건부기금자산(qualified funding assets)”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수탁자(assignee)의 총소득에서 제외한다.¹⁵⁾

“조건부양도계약(qualified assignment)”은 개인의 신체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소송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법 하의 보상에 대해 정기금지급 손해배상책임을 수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기금은 그 규모와 기간이 고정되며, 수령자에 의해 조기지급 또는 연기되거나, 증가·감소할 수 없다. 이때 수탁자의 채무는 이를 위탁한 가해자의 채무보다 크지 않다.

“조건부기금자산(qualified funding asset)”은 주법 하에 허가받은 생명보험 회사에 의한 연금계약이나 미국 국채(obligation of United State)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금계약 또는 국채는 조건부양도계약하에서 정기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자에 의해 사용된다. 그 정기금의 기간과 규모는 조건부양도계약을 따르며, 연금과 채권은 납세자에 의해 선정되고 조건부양도계약 전후 60일 이내에 구입해야 한다.

15) 이때 소득은 “qualified funding assets”의 총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규모에 대해서 비과세이므로, 만약 가해자가 100,000달러를 구조화지급방식회사에 지급하여 3,000달러를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 97,000달러를 피해자를 위한 연금구입에 사용할 경우 3,000달러의 수수료만 과세대상이다.

라. 운영현황

1) 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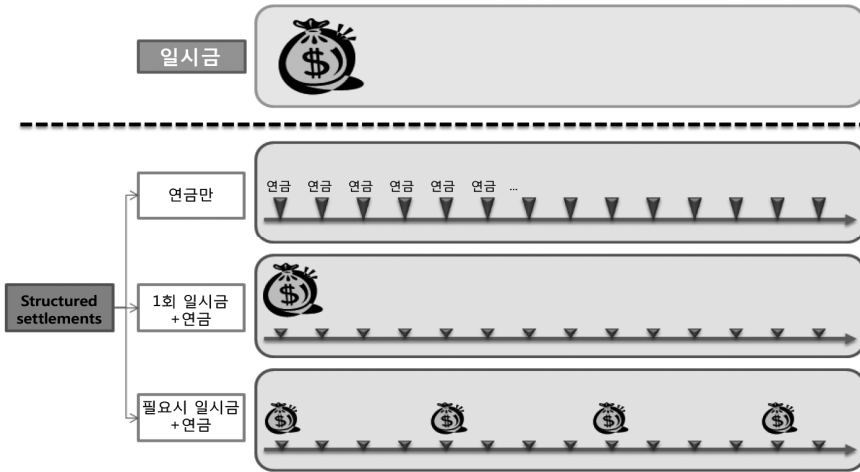
구조화지급방식이란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받도록 보상방법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화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소진을 막고 안정된 현금 흐름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장기간의 의료간병이나 생활비 보조가 필요한 경우, 사망 후 유족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유족이 미성년자나 무능력자와 같이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안정적으로 장기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산정된 총 보상금액은 수령 형태와 기간 설정 등에 따라 지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령방법, 지급기간, 지급규모 등 지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우선 연금과 더불어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일시금의 혼합 수령이 가능하다. 1회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하여 수령할 경우 일시금을 다양한 목적(생계유지비, 자녀교육비, 소비재구입, 저축, 채무청산 등)으로 사용하거나 은퇴시기에 맞춰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기(예, 5년마다 월체어 교체)에 맞추어 여러 번의 일시금 수령시기를 설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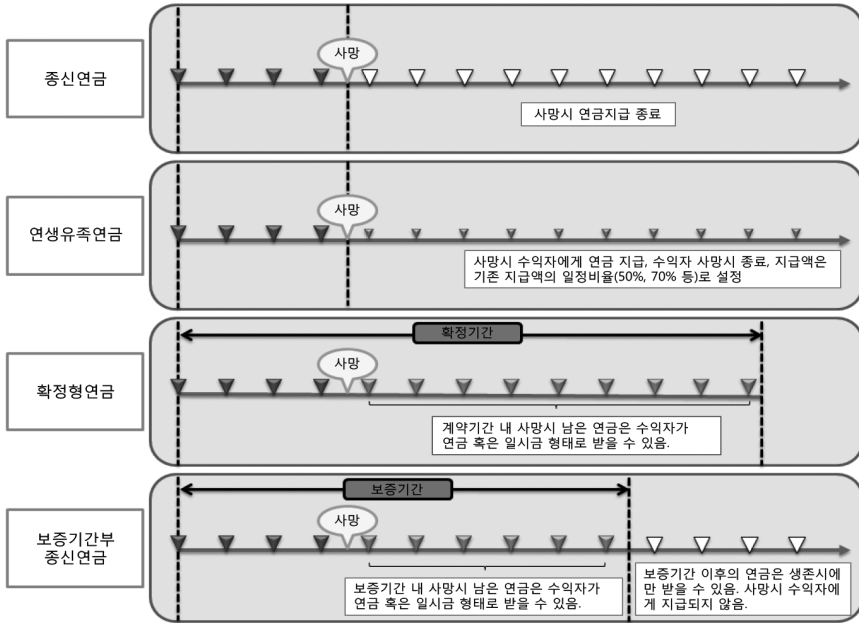
〈그림 IV-2〉 수령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른 옵션



다음으로 지급기간 설정에 따른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신으로 받을 것인지, 보증기간을 설정할지, 수익자를 지정할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에 따라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급보증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할 수도 있다.

연생유족연금(joint and survival annuity)의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은 수익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며 지급규모는 원 지급액의 일정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 확정형연금(life annuity certain)의 경우 계약기간 내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은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부종신연금(whole life with guaranteed period)의 경우는 보증기간 내 연금수급권자 사망 시 잔여기간 내 연금을 지정수익자가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증기간 이후의 연금은 연금수급권자 본인의 생존 시에만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 이후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그림 IV-3〉 지급기간과 수익자 지정에 따른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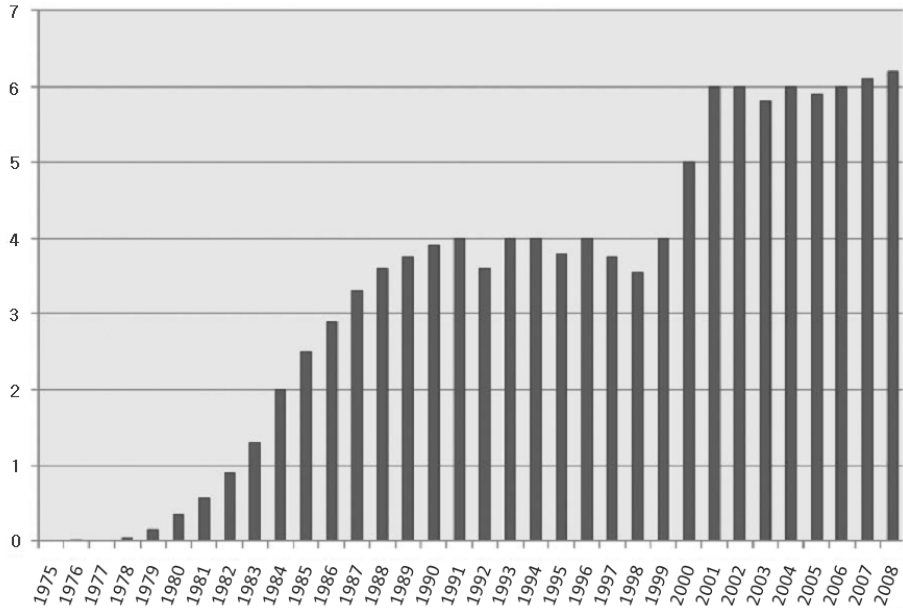


2)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 시장규모

1976년 약 500만 달러, 1979년 3,000건 미만이던 시장 규모는 1983년에 15억 달러(15,000건)를 넘어섰고, 1990년대 초반 약 40억 달러로 성장하여, 2008년 현재 60억 달러 이상의 구조화된 지급방식 연금이 판매되고 있다.

〈그림 IV-4〉 미국의 구조화지급방식 연금 판매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Jeremy Babener(2010), p. 19.

미국구조화지급거래협회(NSSTA: National Structured Settlement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2004년까지 50만 명에게 4,000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ISO 조사¹⁷⁾에 따르면, 전체 인적상해배상청구건의 12%가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30만 달러가 넘는 청구건의 경우 약 25%가 구조화지급방식을 선택하였다.¹⁸⁾ 지급규모도 매우 다양한데 구조화지급방식을 이용하는 청구건의 2/3 이상이 중증상해(major injuries)를 포함하고 총 평균지급금액은 408,000달러였다. 나머지 1/3의 총 평균지급금액은 21만 달러였다. 이러한 구조

16) Jeremy Babener(2010), p. 20; Daniel W. Hendert et al.(2009),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 Payment Judgement" 재인용.

17) 1997년 약 1,750건 이상의 인적사고배상책임청구건을 대상으로 함.

18) NSSTA 조사에 따르면 75,000달러~100,000달러 청구건의 7%, 1백만 달러가 넘는 경우 30%이다. Jeremy Babener(2010), p. 20.

화지급방식은 10,000달러 또는 20,000달러 등 소규모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¹⁹⁾ 실제 5,000달러나 2,700달러와 같은 작은 규모도 보고된 바 있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무렵에는 약 430명의 전업 브로커가 활동하였고, 2001년에는 24개가 넘는 회사가 구조화지급방식과 관련된 연금을 판매하였다.²⁰⁾

2. 영국

가. 도입배경

영국에서 손해배상금제도의 다양화는 1970년대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1990년대에 관련한 법제가 정비되고 2005년에 법원의 정기금지급명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의 정기금지급 관련법에 동기를 제공한 것은 1989년의 7월 14일의 Kelly v. Dawes의 사건이었다. 동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액 일시금이 아닌 일부 일시금과 피해자의 생존기간 동안 면세(tax free)인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건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기금에 대해 다소 모호한 1936년의 세금판례(Dott v. Brown)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1995년에 재무법(Financial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인적사고 손해배상금의 정기금 수요와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급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²¹⁾

19) Jeremy Babener(2010), p. 9; Leo Andrada(2000), "Structured Settlements: The Assignability Problem" 재인용.

20) Jeremy Babener(2010), p. 8; Richard B. Risk(2001), "Structured Settlements: The Ongoing Evolution From a Liability Insurer's Ploy to an Injury Victim's Boon", Tulsa Law Journal, Vol.36, Issue 4, pp. 856~901 재인용.

21) Richard Cropper(2005), "Periodical Payment, Structured Settlements and Conventional Lump Sums", p. 2.

나. 관련법제

1) Finance Act 1995

동 법 Sec.142에 따르면 정기금방식의 손해배상금이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 법은 적용대상 인적사고는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과 질병(any disease and any impairment of a person's physical or mental condition)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기금 손해배상금이 소득세의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인적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적격한 합의(qualifying agreement)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합의서(또는 명령문)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금 형태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가해자(혹은 그들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그들의 보험회사)는 하나 이상의 연금을 피해자에게 구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금을 수령할 자 또는 연금수령을 대신 받을 사람만 면세의 대상이 된다.

정기금의 지급은 피해자의 일생에 걸쳐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을 선택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의 지급규모와 시기는 균등한 비율 또는 간격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급여의 인상 규모 혹은 비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2) Damages Act 1996

동 법은 인적사고에 대한 정기금 등 구조화지급방식을 채택한 피해자의 연금수령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된 법이다. 즉, 손해배상액으로 연금보험을 구입한 경우에 연금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한 법이다. 동 법의 적용대상 인적사고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법원의

정기금지급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동 법에 의하면 2000년 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의거 운용되는 금융서비스보장기구(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 구조화연금(Structured Settlement Annuity)에 대해 총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해 준다.

아울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화지급방식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무보험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는 자동차보험자협회(Motor Insurers' Bureau) 또는 국내규제보험회사(Domestic Regulations Insurer)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 운영현황

인적사고의 정기금제도에서 연금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회사 중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의료지식이 있어야 언더라이팅을 판단할 수 있고 시장이 매우 소규모라는 점에서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구조화지급방식은 폭넓게 쓰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의료과실의 경우에 사용되었다. 2000년 기준으로 대략 연간 200건 정도의 구조화지급방식이 이루어지며 평균 규모가 약 50만 파운드에서 75만 파운드이므로 현재 전체 시장 규모는 연간 1억 파운드에서 1.5억 파운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²²⁾

한편, 구조화지급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배상책임규모가 20만 파운드 이상인 배상이 연간 1,500건에서 2,500건 정도 발생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약 6%에서 8% 가량이 구조화지급방식에 의해 배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잠재적인 시장규모는 약 5억 파운드에서 15억 파운드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²³⁾

인적사고의 정기금제도와 관련한 연금상품의 판매채널은 독립재무설계사(IFA)

22)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2000), p. 6.

23)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2000), p. 7.

가 주도하고 있다. IFA는 당사자에게 복잡한 법적사항과 세무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컨설팅비(professional fees)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정기금지급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비용, 자문료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정기금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o win, no fee). 수수료(commission)는 생명보험회사가 지불하며 수수료율은 일정하지 않고 연금구매가격의 2% 내외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인적상해 시 정기금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구조화지급방식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기금지급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에서 법원은 미래손실을 포함하는 인적상해사건의 경우 정기금지급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러한 명령은 양측의 입장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강제할 수 있다.

3. 호주

가. 도입배경

호주에서의 구조화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활용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1990년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5년 보건부는 구조화지급방식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996년과 1997년에 세계개정안이 뉴사우스웨일즈(NSW), 빅토리아 2개 주에서 제시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의 자동차사고당국(NSW Motor Accident Authority)은 1998년에 연방 및 주 기금에 세계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2001년에 구조화지급방식에 대한 세계혜택이 가능해졌다.

나. 관련법제

호주의 구조화지급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구조화지급방식에 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법은 2001년도에 마련되었다. 동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 구조화지급방식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는 54장(Division 54 - Exemption for certain payments made under structured settlements and structured order, 2002)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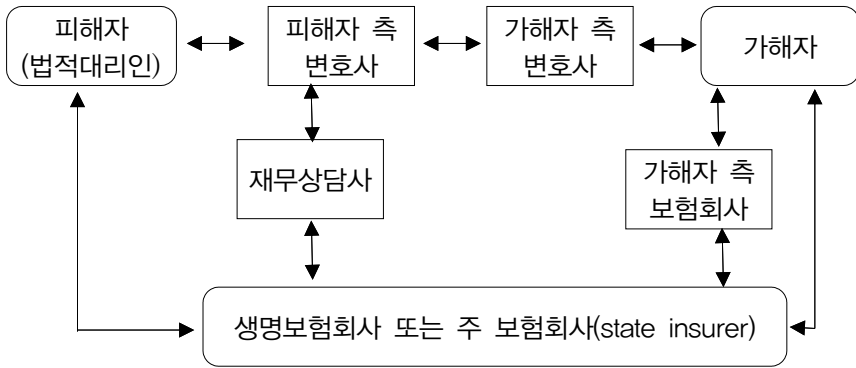
1) 구조화지급방식의 운영 방식

동 법에서는 구조화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구조화지급명령(structured order)을 정의하고 있다.

구조화지급방식은 개인의 인적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적사고는 의료과실, 운동사고, 자동차사고, 공공기관배상책임(public liability),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등이 있다. 단, 산재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수탁자(trustee), 변호인), 피고(보상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의 보험자가 된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기금배상이 이루어지면 변경하거나 일시금형태로 현금화할 수 없다.

구조화지급명령(structured order)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법원 명령에 의해 정기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구조화지급방식과 유사하고 손해배상은 비과세 정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IV-5〉 호주의 구조화지급방식 운영체계



자료: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content/34770.htm>).

3) 비과세조건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소득세 비과세대상 보험상품은 인적사고보상연금, 인적사고보상일시금이다.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 정기금의 규모는 소비자물가지수, 성인의 주간 풀타임 평균임금 등을 참고하여 그 규모를 다양화할 수 있다.

인적사고의 연금급여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연금이 피해자의 일생 또는 적어도 십년 이상 매년 지급되어야 한다. 보증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잔여보증기간 동안의 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때 유산으로 지급되거나 유족이 수익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유산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일시금만 가능하다.

연금증권에는 연금 개시일, 종료일, 매 정기금 규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이 죽은 후 수익자에게 남은 연금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자의 이름을 기명하고, 수익자는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일시금의 경우, 피해자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리인에 의해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된다. 이때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금급여나 구조화지급방식에 포함된 일시금의 경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연금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의 일생 동안 적어도 월 1회 지급되어야 하고 그 규모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수준이란 기초노령연금(basic age pension) 이상을 의미한다.²⁴⁾

다. 운영현황²⁵⁾

호주에서 구조화지급방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54장이 발효되고 난 뒤 오직 한 건의 구조화지급방식만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인적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예치하고 분할하여 지급(allocated pension) 받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퇴직연금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하고 급여의 규모와 시기에 관해 유연한 지급 옵션을 제공하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방식(실적배당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일시금 인출을 포함하여 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설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일시금으로의 완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피해자인 배상청구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면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는 연금상품이 다른 투자옵션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법 개혁으로 인하여 적용할인율이 높아져 구조화지급방식이 일시금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손해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20년간 매주 \$6,000의 치료비용을 지급하

24) 2011. 9. 20 기준, Age Pension 요율(single 기준)은 총 \$784.80(base: \$689.00, supplement: \$59.80).

25) Alan Cameron(2007), "Review of the income tax exemption for structured settlement", pp. 17~23.

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4,578,882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20년간 매주 지급되는 \$6,000에 대하여 3%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4,727,400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5%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3,998,400의 일시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구조화지급방식하에서 연금을 구입하여 주는 것보다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셋째, 생명보험회사들은 배상청구인에게 매력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물가연동 종신연금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적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인적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종신연금 지급기간은 표준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짧다. 따라서 인적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표준적인 종신연금이 지급하는 연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들 리스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격책정과 규모 예측이 어렵다. 그 결과 다시 손해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적합한 상품이 부재하여 구조화지급방식을 많이 활용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주에서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정기금지급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호주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4장의 규정에 맞는 구조화지급방식이 퇴직연금에 비해 배상청구인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금관련 제도와 상품이 발달한 호주의 예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구조화지급방식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호주의 예를 참고하여 배상청구인의 니즈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한 정기금 지급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